

2026. 4. 24.(금) 15:00

제 3 0 8 회 임 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일 러 두 기

1. 해당자료는 예산안, 집행부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대부분의 예산액은 각 금액단위 하위 레벨에서 반올림 값으로 작성하였고,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여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 차

I. 제안경위 및 편성근거	1
I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III. 세입·세출예산 검토	4
1. 세입예산 검토	4
1) 세입규모	4
2) 지방교부세	5
3) 보조금	6
4) 지방채	8
2. 세출예산 검토	10
1) 추경예산안의 재원배분 및 적정성	10
2) 회계별 증감현황	12
3) 기능별 증감현황	13
4) 성질별 증감현황	14
5) 조직별 주요사업 검토	15

I. 제안경위 및 편성근거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595호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2026년 4월 22일 제출된 것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편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1) 및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제반여건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I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편성배경

- 2026년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고유가 부담완화(10조 1천억원), 민생 안정(2조 8천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 7천억원) 등을 내용으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4.10. 국회 본회의 의결)하였으며,
- 이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정부 피해지원금 지역별 차등 지원에 따른 취약계층의 차액 보전과 고유가 피해시민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발표(2026.4.14.)하였음.

*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

- ① 인천e음 3개월 한시 캐시백 비율(10→20%) 및 월 사용한도(30→50만원) 상향,
 - ② 인천e음 주유소 사용처를 매출 30억원 이하 62개소에서 관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
 - ③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기초,차상위,한부모)에 5만원 추가 지급,
 - ④ 노후 택시 폐차지원 대상(666→1600대) 상향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증액 등
- 인천시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서울시 외 지자체 20% 지방비 부담) 등 회계연도에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추경 사업비 부담에 필요한 매칭시비와 인천형 민생지원의 재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금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지방재정 보강(초과세수 연동 지방교부세 증액분) 재원 등을 우선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음.

2. 편성규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조 8,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3,260억 원 대비 5,430억 원(3.5%) 증가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가 12조 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0억 원(4.7%)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조 8,6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추경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합 계	15,868,992	100.0	15,325,988	100.0	543,004	3.5
일 반 회 계	12,007,352	75.7	11,464,348	74.8	543,004	4.7
특 별 회 계	3,861,640	24.3	3,861,640	25.2	-	-
공 기 업	1,841,742	11.6	1,841,742	12.0	-	-
기 타	2,019,898	12.7	2,019,898	13.2	-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Ⅲ. 세입·세출예산 검토

1.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세입 규모

-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 증감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조 8,621억 원, 세외수입은 1조 9,847억 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는 1조 8,179억 원으로 각각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등은 1조 1,7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4억 원(19.0%) 증가,
 - 보조금은 5조 6,0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4억 원(5.4%) 증가,
 - 지방채는 4,3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억 원(18.2%) 증가하였음.

【세입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기정액	구성비		
합 계	15,868,992	100.0	15,325,988	100.0	543,004	3.5
지방세수입	4,862,128	30.6	4,862,128	31.7	-	-
세외수입	1,984,689	12.5	1,984,689	12.9	-	-
지방교부세등	1,170,987	7.4	983,615	6.4	187,372	19.0
보조금	5,602,494	35.3	5,313,122	34.7	289,372	5.4
지방채	430,781	2.7	364,521	2.4	66,260	1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7,913	11.5	1,817,913	11.9	-	-

*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교부세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등 증감을 살펴보면,

- 보통교부세는 1조 1,2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74억 원(19.9%) 증가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통지('25.12.31.)에 따른 교부세 확정분과 본예산 편성분의 차액(1,100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과 정부 제1회 추경에서 내국세 초과세수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방 배분액*(774억 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임.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에 해당 (정부 제1회 추경 보통교부세 총재원 4조 5,390억 원 중 인천시 774억 원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지방교부세등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지 방 교 부 세 등	1,170,987	983,615	187,372	19.0
보 통 교 부 세	1,127,372	940,000	187,372	19.9
소 방 안 전 교 부 세	42,662	42,662	-	-
지 방 소 멸 대 응 기 금	953	953	-	-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근 5년간 인천시 보통교부세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예산액	증감률	추경예산안	증감률
지 방 교 부 세	1,209,171	941,891	△22.1	965,686	2.5	1,053,839	9.1	1,170,034	11.0
보 통 교 부 세	1,157,017	882,402	△23.7	920,000	4.3	1,003,206	9.0	1,127,372	12.4

* 일반 및 특별회계 / * 출처: 2026년도 본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2022~2025년 예산액(최종예산 기준), 2026년 예산액(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

3) 보조금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보조금은 5조 6,0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94억 원(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금은 4조 8,43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8억 원(6.2%) 증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5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원(5.4%) 증가하였음.

【보조금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보 조 금	5,602,494	5,313,122	289,372	5.4
국 고 보 조 금	4,843,057	4,562,223	280,834	6.2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보 조 금	451,032	442,494	8,538	1.9
기 금	308,405	308,405	-	-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조금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담당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2,650억 원 순증,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기정액 대비 158억 원 증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정액 대비 85억 원 증가 등이 반영됨.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0~60만원 지원 (인천시민 약 222만명)

구 분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수도권	10만원	45만원(+35만원)	55만원(+45만원)
비수도권	15만원(+5만원)		
인구감소(우대)	20만원(+10만원)	50만원(+40만원)	60만원(+50만원)

※인천 인구감소지역: 강화, 옹진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환급률 한시적 확대

	저소득	3자녀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
환급률(15회이상 이용시)	53→83%	50→75%	30→45%	20→30%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6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목표액 3조원, 인센티브(캐시백) 제공

【국고보조금등 증감 주요 내역】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5년				증감사유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65,040	-	265,040	순증	정부 1회 추경 관련 고유가 민생 부담 완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48,051	32,257	15,794	49.0	정부 1회 추경 관련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절감
(사회적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8,218	49,680	8,538	17.2	정부 1회 추경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 일반회계 /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지방채

- 「지방재정법」 제11조3)에 따라 지자체는 재정투자사업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불가능한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4)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채 발행액은 4,3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의 시비 매칭 자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반영한 것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적 변화가 발생하여 정부가 긴급한 재정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시가 이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채 발행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채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지 방 채 소 계	430,781	364,521	66,260	18.2
정 부 자 금 채	954	954	-	-
모 집 공 채	429,827	363,567	66,260	18.2

* 일반 및 특별회계 /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 3)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2025.10.1. 개정)
 4. 지방채의 차환 (이하생략)
-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이하생략)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방채 발행액
합 계			66,260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 (20%) 자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 (대상) 인천거주 소득하위 70% 약 222만명 - (금액) 수급자 55만원, 차상위 45만원, 소득하위 70% 10만원 등 - (부대경비) 보조인력인건비 418명 등	66,260

* 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 아울러, 금번 추경안 지방채 발행 총 한도는 인천시 예산총칙 제5조5)의 기본한도액 5,019억 원과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별도한도액) 2,519억 원을 합한 7,538억 원이고, '26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이 반영된 총 발행계획은 5,273억 원(지역개발채권 965억 원 포함)으로 지방채 발행이 한도액 내에서 편성 요청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최근 4년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이 13% 내외로 유지되다가, '24년부터 대규모 건설사업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지방채 상환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관리채무비율) '22년 12.7% → '23년 12.4% → '24년 12.0% → '25년 13.2% → '26년(제1회 추경) 15.0%(추정)

5)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01,900,000천원으로 한다.

6) 별도한도(251,895백만 원) '26년 지방채 차환 발생액(155,400백만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96,495백만원)

2.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추경예산안의 재원배분 및 적정성 검토

- 지난 4월 22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가 운용 중인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3개, 기타 15개) 중 일반회계의 9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액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 이 중 정부 추경예산이 내시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은 국·시비를 반영하여 4,859억 원(국비 2,894억 원, 시비 1,9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은 인천형 민생지원 사업 등으로 전액 시비 571억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추경안 증액 재원 분포 현황】

(단위: 백만 원)

세입편성 재원 분포			세출편성 재원 분포			
구 분	증감(합계) 543,004	주요 증감 내역	구 분	증감(합계) 543,004		주요 증감 내역
				국 비	시 비	
지방교부세	187,372	° 보통교부세	(정 부) 고 유 가 피해지원금	265,040	66,260	° 피해지원금 (328,350) ° 부대비용 (2,950) ※ 지방채로 시비 매칭
국고보조금	265,040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정부)	인 천 형 역 차 별 해소지원금	-	11,432	° 해소지원금 (11,000) ° 부대비용 (432)
	15,794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538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인 천 e 음 발행 지원	8,538	114,500	° 지역사랑상품권 3개월 한시 혜택 확대
지 방 채	66,260	° 지방채(고유가 피해지원금)	인 천 e 음 활성화지원 (자 체)	-	12,700	° 지역사랑상품권 3개월 한시 추유소사용처 확대
			농 어 업 인 수 당	-	113	° 수당 대상 증가 반영 및 산지급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15,794	15,794	° K-패스 6개월 한시 환급률 인상 등

버스 유가 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	4,000	° 유류비 상승 연동 보조금 추가
노후 택시 대 폐 차 보조금 지원	-	1,400	° 노후 택시 대체차 유도로 시민안전 확보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	27,433	° 유류비 상승 연동 보조금 추가

-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농어민,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경기 침체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추경 편성의 목적적합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불확실성이 어느 시점까지 작용할지 알 수 없고 회계연도가 상당 기간 남아있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등 가용한 자주재원을 미리 소진할 경우,
 -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새로운 정책 수요나 지역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법정·의무 지출 위주의 재정 운영으로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과 추가 필수 자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확대된다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지방세 수입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보수적인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체납 징수 강화와 세원 발굴을 통해 추가 자원 확보와 재정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재배분 방안 검토 및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점검하여 법적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성 검토, 또한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부세 등의 추가 확보 등 전략적 자원 확충·관리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

2) 회계별 증감현황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5조 8,6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0억 원(3.5%)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회계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12조 7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30억 원(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3조 8,61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음.

【회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868,992	100.0	15,325,988	100.0	543,004	3.5
일반회계 소계	12,007,352	75.7	11,464,348	74.8	543,004	4.7
특별회계 소계	3,861,640	24.3	3,861,640	25.2	-	-
공기업특별회계	1,841,742	11.6	1,841,742	12.0	-	-
기타특별회계	2,019,898	12.7	2,019,898	13.2	-	-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기능별 증감현황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기능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조 7,6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27억 원(24.1%)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3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0.1%)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분야는 5,0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7억 원(37.0%) 증가, 교통및물류분야는 1조 6,6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4억 원(4.0%) 증가 하였음.

【기능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868,992	100.0	15,325,988	100.0	543,004	3.5
일 반 공 공 행 정	1,764,273	11.1	1,421,541	9.3	342,732	24.1
공 공 질 서 및 안 전	598,600	3.8	598,600	3.9	-	-
교 육	875,463	5.5	875,463	5.7	-	-
문 화 및 관 광	389,111	2.4	389,111	2.5	-	-
환 경	961,891	6.1	961,696	6.3	-	-
사 회 복 지	6,330,852	39.9	6,330,852	41.3	-	-
보 건	229,887	1.4	229,887	1.5	-	-
농 립 해 양 수 산	153,460	1.0	153,346	1.0	113	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2,777	3.2	367,234	2.4	135,738	37.0
교 통 및 물 류	1,663,209	10.5	1,598,789	10.4	64,420	4.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402,353	8.8	1,402,353	9.2	-	-
과 학 기 술	40,573	0.3	40,573	0.3	-	-
예 비 비	35,824	0.2	35,824	0.2	-	-
기 타	920,720	5.8	920,720	6.0	-	-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질별 증감현황

-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성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4,3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0.1%) 증가, 경상이전은 10조 1,9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12억 원(5.6%) 증가, 자본지출은 2조 3,0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0.1%) 증가하였음.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5,868,992	100.0	15,325,988	100.0	543,004	3.5
인 건 비	715,758	4.5	715,758	4.6	-	-
물 건 비	434,367	2.8	433,935	2.8	432	0.1
경 상 이 전	10,195,031	64.2	9,653,859	63.0	541,172	5.6
자 본 지 출	2,301,902	14.5	2,300,502	15.0	1,400	0.1
용 자 및 출 자	11,982	0.1	11,982	0.1	-	-
보 전 재 원	116,519	0.7	116,519	0.8	-	-
내 부 거 래	2,033,455	12.8	2,033,455	13.3	-	-
예 비 비 및 기 타	59,977	0.4	59,977	0.4	-	-

* 일반 및 특별회계 / 자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 민생기획관

-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담당관/예산안137,138p)관련’ 사업은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대응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과 인천시 자체 추가지원인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3,427억 3,200만 원(국비 2,650억 4,000만 원/시비 776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6년 본예산 (A)	'26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증감률	
		총계(B)	국비	시비			
합계	—	342,732	265,040	77,692	342,732	순증	
정부 대 응	고유가 피해지원금	—	328,350	262,680	65,670 (지방채)	328,350	순증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 대 비 용	—	2,950	2,360	590 (지방채)	2,950	순증
인 천 시	인천형 역차별 해 소 지 원 금	—	11,000	—	11,000	11,000	순증
	인천형 역차별 해 소 지 원 금 부 대 비 용	—	432	—	432	432	순증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동 사업은 정부 대응 추경과 연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총 3,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이 단기간 내 투입되는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집행절차의 명확성, 사업 효과성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일회성 현금 지원사업에 시비 재원 776억 9,2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구조인 바, 지속적인 자산 형성이나 투자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단기 소비성 사업에 채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재정운용 여력 축소 가능성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2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총 1,303억 4,2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시민 약 209만 명을 대상으로 총 2,090억 8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2차 보편지원 성격의 지급에 집중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차 지급 대상은 인원 규모가 큰 만큼 신청 집중, 대상자 검증, 지급 지연,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신청기간 분산 운영, 전산시스템 사전 점검, 군·구 협업체계 구축 등 집행 준비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110억 원이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별도로 추가 지원 되는 구조인 만큼, 정부지원금과의 중복효과, 체감도 제고 수준 및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사업 종료 후 정책효과와 체감도에 대한 사후평가가 필요함.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지급액]

(단위: 백만 원)

사업명	1차 지급(130,342)			2차 지급(209,008)	
	차상위·한부모 (약 2만명)	기초수급자 (약 20만명)	우대(강화옹진) (약6,700명)	소득하위 70% (약 200만명)	우대(강화옹진) (약90,000명)
합계	총 9,981 국)7,185 시)2,796	총 120,024 국)88,019 시)32,005	총 337 국)270 시)67	총 200,008 국)160,006 시)40,002	총 9,000 국)7,200 시)1,800
정 부 지 원 금	총 8,981 국)7,185 시)1,796	총 110,024 국)88,019 시)22,005	총 337 국)270 시)67	총 200,008 국)160,006 시)40,002	총 9,000 국)7,200 시)1,800
인천형 역차별 해 소 지 원 금	총 1,000 시)1,000	총 10,000 시)10,000	-	-	-

※ 자료 : 민생담당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사업개요 】

- 지급대상 : 인천시 거주 시민('26 3. 30. 기준)
 - 1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차: 소득하위 70% 시민(1차 지급자 제외)
 - 인천형 추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2만 명
- 신청기간 : (1차) 4.27.(월) ~ 5.8.(금) / (2차) 5.18.(월) ~ 7.3.(금)
(인천형 추가지원) 5.11.(월) ~ 7.3.(금)
- 지급수단 : ① 신용체크카드 충전 ②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형)(선불지류 불가)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 60만원

구 분	1차 지급		2차 지급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인천전지역	55만원	45만원	10만원	1,2차 합산
강화옹진군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인천형 추가지원	5만원	5만원	-	별도지급

- 사용기한 : '26.8.31.(월) 24:00까지 ※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인천시 관내 전역 사용
- 사용업종 :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등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1차 지원과 소득하위 70% 시민 대상 2차 지원으로 추진 되는 사업으로, 시는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656억 7,000만 원(국비 2,62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A)	'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증감률
		합계(B)	국비	시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328,350	262,680	65,670 (지방채)	328,350	순증
사회적보장수혜금(301-01)	-	328,350	262,680	65,670 (지방채)	328,350	순증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 및 서민층의 소비여력을 보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지원 필요성은 타당해 보임.
 - 다만, 정부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대상자를 선정⁷⁾하는 사업인 바, 대상자 선정기준과 기준선 설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⁸⁾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기준일, 신청방법, 지급절차, 이의신청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시민 문의도 다수 예상되므로 정부지침에 근거한 세부 안내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①신용·체크·선불카드, ^②지역사랑상품권 일부카드/지류형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는 신용·체크카드 및 인천e음으로 지급 방식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을 배제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신청 및 사용 편의성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대상자 수가 추계치를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실제 지급 과정에서 대상 인원 증감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은 지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발행수수료, 보조 인력 인건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등 총 29억 5,000만 원(국비 23억 6,000만 원, 시비 5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7) 행안부 보도자료('26. 4. 12.)

1. 5.18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한다.

2.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 대상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8)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는 고액자산가 제외 및 최근 소득감소자 보완절차 등을 운영한 바 있음.('26년 국회 행안위)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 (A)	‘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증감률
		합계(B)	국비	시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 지급	-	2,950	2,360	590 (지방채)	2,950	순증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2,950	2,360	590 (지방채)	2,950	순증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은 발행비용 15억 3,400만 원, 보조인력 인건비 13억 1,4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부 산출내역, 인력 배치기준 및 투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 】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발행비용	보조인력	장비임차	홍보비
계	2,950	1,534	1,314	53	49
국비(80%)	2,360	1,227	1,051	42	39
시비(20%)	590	307	263	11	10

※ 자료 : 민생담당관

-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은 정부지원 대상 간 지원수준 차이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2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총 11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함.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 (A)	‘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증감률
		합계(B)	국비	시비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지급	-	11,000	-	11,000	11,000	순증
사회적보장수혜금(301-02)	-	11,000	-	11,000	11,000	순증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별 차등지급 방침⁹⁾에 따라 수도권 거주 1차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가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격차를 시 자체 재원으로 보완하려는 조치인 바,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지원수준 차이를 지방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의 타당성, 중앙정부와의 협의 경과, 제도개선 요구 및 직접지원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 체감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지원 취지는 이해되나, 지원대상을 기존 1차 지급대상자로 한정할 사유, 1인당 5만 원 지급액의 산정근거, 실질적인 지원효과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지원 사업은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반복적인 지원 요구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회 사업이 단년도 한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부대비용은 인천e음 시스템 운영비 및 카드 발행비 등 지급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4억 3,2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함.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명	2026년 본예산(A)	'26년도 제1회 추경안			증감 (B-A)	증감률
		합계(B)	국비	시비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운영비용	-	432	-	432	432	순증
사무관리비(201-01)	-	432	-	432	432	순증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26.4.11.-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지역/49개)	60만원	50만원	20만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원지역/40개)			25만원

-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지급 방식은 지급재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존 인천e음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추가 시스템 운영비 및 카드 발행비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지급 실적, 소비 진작 효과, 시민 체감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

(단위 : 백만 원)

연 번	부서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342,732	265,040	77,692
1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328,350	262,680	65,670
2	민생담당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대비용 지급	2,950	2,360	590
3	민생담당관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지급	11,000	-	11,000
4	민생담당관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운영비용	432	-	432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산업경제위원회

■ 경제산업본부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사회적경제과/예산안141p)’ 사업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대응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1,357억 3,800만 원 증액(100%)된 2,708억 1,800만 원을 편성함.
- 증액사유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85억 3,800만 원) 통보('26.2.6.)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유가·고환율 위기 대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시비 1,145억 원 증액 및 인천e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12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임.
- 동 사업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주유소 사용처를 기존 매출 30억 원 이하의 62개소에서 전체 주유소 367개소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글로벌 위기 상황가운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가계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유류비 절감효과를 위한 지원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단기적 소비유도 성격이 강해 재정투입 대비 지속효과 및 3개월 이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사업 변경내용]

사업명	기정예산	1회 추경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발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261만 사용자 ○ 지원조건 - 월30만원 한도 캐시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 3개월 한시 적용 - 월 30만원 → 50만원 상향 - 캐시백 10% → 20% 상향 - 인천e음 주유소 사용처 매출30억 이하 주유소(62개소) → 인천e음 가맹 쉼 주유소로 확대(367개소)

■ 농수산식품국

- ‘농어업인 수당(계속)(농축산과/예산안142p)’ 사업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40만 원 증액(2.0%)된 59억 1,340만 원을 편성함.
 - 증액사유는 지급 방식을 월 분할 지급(5만 원)에서 일시지급(60만 원)으로 전환 과정에서 군·구 추가 수요(270가구)를 반영한 사항임.
 -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성격을 갖는 정책으로, 최근 고유가 및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월 분할 지급방식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취약 계층인 농어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당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등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바, 대상가구 수요예측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최근 3년간 농어가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농어가)

2024년		2025년		2026년	
최종 예산액	지원대상	최종 예산액	지원대상	예산요구	지원대상
6,815	13,093	6,027	13,292	5,913	14,079

□ 건설교통위원회

■ 교통국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계속)(교통정책과/예산안145p)’ 사업은 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15억 8,800만 원 증액(47.6%)된 979억 6,700만 원을 편성함.

- 증액사유는 정부 추경반영 국고보조금 배분 변경 확정내시 통보('26.4.15.)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국·시비를 각각 157억 9,400만 원 증액한 것임.
- 동 사업은 시민이 K-패스 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고유가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차 시간대 환급률을 최대 30%p 상향하고 정액형(모두의 카드)은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임.
- 고유가 및 고물가 시기에 차량 2부제 및 5부제 시행과 맞물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지원 정책으로 한시적 환급률 인상이 기존 이용자에 대한 단순 보전이 아닌, 실제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K-패스 추경 한시적용 환급 기준]

① 기본형(정률형) : 환급률 30%p 상향(출퇴근 시차시간)

구분	당초 환급률	추경 한시적용 환급률	
		기타 시간	출퇴근 시차 시간*
일반 국민	20%	20%	50%
청년·2자녀·어르신	30%	30%	60%
3자녀 이상	50%	50%	80%
저소득층	53.3%	53.3%	83.3%

* 출퇴근 시차시간 :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② 「모두의카드」(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단위: 만 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수도권	6.2	3	10	5	5.5	2.5	9	4.5	4.5	2.2	8	4
일반 지방권	5.5	2.7	9.5	4.7	5	2.3	8.5	4.2	4	2	7.5	3.7
우대 지원지역	5	2.5	9	4.5	4.5	2.1	8	4	3.5	1.7	7	3.5
특별 지원지역	4.5	2.2	8.5	4.2	4	2	7.5	3.7	3	1.5	6.5	3.2

* 일반 : 1회 요금 3천원 미만(일반버스, 지하철) / 플러스 : 3천원 이상(광역버스, GTX 등)

-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계속)(버스정책과/예산안146p)’ 사업은 시내버스 노선버스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이 증액(35.7%)된 152억 원(전액시비)을 편성함.
 - 증액사유는 수소버스 도입 확대(400대→ 640대 예상)에 따른 연료비(수소충전)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필요성에 기인한 것임.
 - 동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상지출 성격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투입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며, 특히 수소버스 확대는 친환경 교통정책과도 연계된 사업으로 판단됨. 다만, 전체 예산의 약 80%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바, 해당 지원 단가가 높은 수소버스의 보급 속도가 인천시의 재정 여력을 초과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노후 택시 대체차 보조금 지원(계속)(택시운수과/예산안147p)’ 사업은 노후 택시 대체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 증액(140.0%)된 24억 원(전액시비)을 편성함.
 - 동 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노후화된 택시를 신차로 교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택시 이용 시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666대 기준)이 상반기 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 수요조사(1,592대)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1,600대로 대폭 확대한 것이 주된 증액 사유임.
 - 신규 차량의 지능형 안전장치(ADAS) 장착으로 인한 법인택시 사고율 감소 등 개별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되나, 당초 본예산 대비 140.0%에

달하는 증액과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는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함.

■ 해양항공국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계속)(물류정책과/예산안148p)’ 사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 및 유가연동보조금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74억 3,260만 원 증액(57.1%)된 754억 4,760만 원(전액시비)을 편성함.

- 증액사유는 중동지역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을 지속 초과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의 추가 소요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 동 사업은 고유가 위기 속에서 화물운송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물류비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편성 재원이 인천시 자체 세수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되는 자동차세(주행분)* 범위 내에서 활용되므로 재정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2026년도 자동차세(주행분) 총 배분 예상액 : 1,597억 원

- 다만, 매년 유류비 변동폭이 크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어 최근 3년간(2023~2025년) 집행률 평균이 약 62% 수준에 불과한 바, 보다 세밀한 추계가 이루어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유류세연동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단위 : L/kg/원)

구분	23.1.1. ~24.2.28.	24.3.1. ~24.6.30.	24.7.1. ~24.10.31.	24.11.1. ~25.4.31.	25.5.1. ~25.10.30.	25.11.1. ~26.3.26.	26.3.27. ~현재
경유	152.37	152.37	187.62	224.28	266.58	292.66	213.00
증감	0원	0원	35.25원	36.66원	42.3원	26.08원	△79.66원
LPG	131.66	131.66	142.82	155.60	170.4	179.47	179.47
증감	10.93원	0원	11.16원	12.78원	14.8원	9.07원	0원
수소	4,1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증감	0원	900원	0원	0원	0원	0원	0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 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증감액 (b-a)	증감률 (b-a) /a
			기정액 (a)	제1회 추경안				
				계(b)	국비	시비		
일반회계								
1	사회적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5,080	270,818	58,218	212,600	135,738	100
2	농축산과	농어업인 수당	5,800	5,913.4	-	5,913.4	113.4	2.0
3	교통정책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66,379	97,967	48,051	45,638	31,588	47.6
4	버스정책과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11,200	15,200	-	15,200	4,000	35.7
5	택시운수과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1,000	2,400	-	2,400	1,400	140
6	물류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8,015	75,448	-	75,448	27,433	57.1

※ 자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